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근거 마련〉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899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24일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 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가 벌칙 조항에는 있으나, 금지행위 조항에는 없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시설물 제거 또는 행위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기에 벌칙을 완화하여 법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를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조항에 포함시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조정하여 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44조 등).

Ⅲ. 검토의견

1.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원상
회복 등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행위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고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원상회복 등) ①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 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원상회복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 ----- ----- ----- ----- ----- -----.
<신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u><신 설></u> <u><신 설></u> ② (생 략)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 략)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제45조(벌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u><신 설></u>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3.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의 해수욕장시설사업 관리체계를 보면, 현행법 제36조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은 관리청이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관리청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 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44조에는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개정안은 ①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행위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②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고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려는 것임.¹⁾

1) 참고로, 개정안은 범부처 경제형벌규정 개선 TF('22.7월, 기재부 산하) 3차에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하여 발의된 것임.

□ 현행법에 근거해서도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으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설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행위중지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법 집행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였을 때 위반수준 대비 제재수준이 높으므로 벌칙을 완화하여 법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표] 유사 입법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므로, 감경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18